2006. 12.28

홍콩의 식품 수입관리제도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53, shinilgi@khidi.or.kr)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홍콩의 식품 수입관리제도

- 홍콩과 중국의 관계
  - 홍콩은 1997년 7월 1일에 중국의 특수 행정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기본법은 홍콩 특수 행정 구역에 대한 법률적 기틀을 제공한다. 이 법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시스템” 개념을 제도화하였다. 기본법은 홍콩에 사회, 경제, 정치적 시스템은 중국 본토의 시스템과는 다를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홍콩을 독립된 국제 관세 영역으로 인정하여 홍콩이 전략적 상품, 의약품, 불법적 환적 무역을 관리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국제단체와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홍콩은 자유 무역 관행을 유지하며 자유 무역항으로 남아있다.
-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다른 자국의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홍콩에서 시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틀은 공공 보건 및 서비스 조례 5편 132장과 하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기본개념은 판매용식품은 인체소비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며, 하위법률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식품 규정중 색소 항목
  - 분유 규정
  - 식품 혼합(인공 감미료) 규정
  - 식품 혼합(금속 오염) 규정
  - 식품 및 의약품(구성 및 표지) 규정
  - 식품 사업 규정
  - 빙과류 규정
  - 식품 규정중 위해 물질
  - 수입된 수렵 육류 및 가금류 규정
  - 우유 규정
  - 식품 규정중 미네랄 오일 항목
  - 식품 규정중 방부제 항목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국내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식품 관련 입법 시행을 담당하며,

홍콩의 식품 수입업체가 원산 국가의 보건 당국에서 발행한 보건증명서(Health Certificates)를 획득하는 것을 장려함

- 보건증명서는 식품이 인체 소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로 수입품에 동봉해야 하고 FEHD는 박테리아 검사 및 화학적 분석을 포함한 각종 시험을 위해 입국 시점에서 식품 견본을 채취함
- 식품 및 의약품(구성 및 표지) 규정은 식품 제조업체와 포장업체가 합법적이고도 통일된 방법으로 제품에 표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서 제시한 대로 '면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사전 포장 식품의 표지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식품법

>포장 식품은 이름이나 명칭을 표지에 읽기 쉽도록 기재해야 함

· 성분목록

>성분은 중량이나 부피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하며, 첨가물이 식품 성분에 함유된 경우, 구체적인 이름이나 적절한 분류(즉, 방부제, 인공 감미료 등), 또는 이름과 종류 모두를 표시해야 함

· "~전 까지(best before)" 또는 "~까지 사용(use by)" 표시

>생물학적 관점에서 짧은 기간 내에 부패하기 쉬운 포장 제품의 경우에는 "- 까지 사용"(중국어로도) 표시

>표시는 영어나 중국어로 표기하여 그 뒤에 식품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보관 수명을 기재

>보관 수명이 18개월을 넘는 냉동식품 및 기타 식품은 이러한 유효기간 표지요건에서 제외됨

· 특수 보관 용법이나 사용법

>제품 보관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또는 포장 식품 이용에 특별한 사용법이 적용될 경우, 해당 설명을 표지에 기재

· 제조자, 또는 포장자 성명 및 주소

>포장식품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자, 또는 포장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확히 표시해야함

a) 포장에 홍콩의 유통업체 및 브랜드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와 원산 국가 표시가 기재되었거나, 원산 국가에 식품 제조자나 포장자의 주소가

FEHD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

b) 포장에 원산 국가 표시가 제조자나 포장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와 함께 표시되었거나 제조자의 특수 코드 표시가 FEHD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

· 물량, 중량, 부피

>식품 표지에는 식품의 수량, 순 중량 및 순 부피를 표시

· 적절한 언어

>포장 식품의 표시나 표지는 영어나 중국어,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표시 가능

>포장 식품의 표지나 표지에 영어와 중국어 모두를 사용한 경우, 식품명과 성분 목록도 두 언어 모두로 표시해야 함

· 표지 규정의 면제 항목

>단일 항목으로서 판매용의 개별 포장된 과자 제품과 저장 과일, 알코올 농도가 1.2%를 초과하고 즉시 소비를 위해 케이터링 시설 판매용으로 사전 포장된 식품

- 식품 수입시 유의사항

· 홍콩 FEHD는 수입업체가 육류 제품, 빙과류, 유제품의 수입에 대해 공식 보건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

· 적송물이 도착하여 판매되기 전, 견본을 채취하여 검사 실시 후 부서의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허가” 서신을 수입업체에 발급